

## 1. 요약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일본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실비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분심위가 과실비율과 손해액을 조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과실비율 분쟁은 보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 과실비율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실비율 관련 민원, 분쟁자료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과실비율의 손해액에 대한 영향, 분심위의 과실비율 조정 현황 등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과실비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과실비율과 보상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과실비율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은 손해액이 과실비율에 민감하게 변동하기 때문이다. 손해액 변동은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나 치료비,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손해액 변동은 피해자의 보험료 할인·할증에 영향을 미친다. 민원과 더불어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은 분쟁이 제기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심위에서 과실비율이 조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심의단계별 심의위원 구성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대표협의회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구성되는데 조정 건수 비중은 20% 내외이다. 여기서 협의되지 않는 분쟁 건은 소심의위원회에 제기된다. 소심의위원회는 변호사로 구성되는데 조정 비중은 60% 내외 수준이다. 소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되지 못할 경우 재심의위원회에 제기되는데 재심의위원회도 변호사로 구성되고 조정 건수 비중은 14% 내외이다. 소심의위원회 조정 건수 비중이 대표협의회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이유는 대표협의회의 보험회사 직원과 변호사들이 인식하는 사고 책임과 수정요소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과실비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과실비율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이유로 사고에서 운전자에 예상한 과실비율과 보험회사에서 결정한 과실비율이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문 응답자들은 과실비율 사고도표와 기본과실, 관련 해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지만 주요 사고도표의 기본과실과 관련 근거(도로교통법, 판례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상황에서 사고책임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따르는 기본과실과 일반인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과실비율에 대한 국민의 낮은 수용성, 과실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실비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실비율에 대한 일관성 정립, 보험금 지급기준 일원화, 수리비 감소를 위한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실비율에 대한 일관성 정립을 위해서 보험회사는 변호사 등 법률가들의 과실비율 결정 참여 확대, 분심위는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운전자와 보험회사 직원, 법률가의 과실비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실비율의 일관성 제고와 더불어 민원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금 지급기준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송의 유무, 민원의 유무, 보험금 수취 경험 유무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금액은 보험금 한도를 무한으로 상정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승 폭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높아지는 보험금을 고려하여 민원인, 분쟁제기인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목적인 금전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 법원의 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경우 법원 판결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셋째, 금융감독당국은 고가차와 저가차 문제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수리비를 줄이기 위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미손상 수리기준 실효성 제고를 통해 고가차의 수리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보고서는 과실비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에 대한 인식 정립, 보험금 지급기준 일원화, 수리비 감소를 위한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과실비율 민원자료와 분쟁자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과실비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은 저자가 알기로는 몇 되지 않는 결과이다. 그리고 과실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이유와 모순적 배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 과실비율의 문제점,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과실비율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도이다.

보고서의 한계로는 미국의 과실제도를 검토하였고 과실비율 결정과 분쟁 조정제도 등은 일본에 국한하여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제도는 기본법에서부터 유사하고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자동차사고 인정기준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비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문화적인 요인, 사법체계의 차이, 자동차보험 운영체계의 차이는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순수비교과실제도를 수정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교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보고서가 지향하는 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계가 있지만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과실비율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과실비율 제도개선 방안과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표준약관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